

#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 간호법규

- ☆ 55분 완성
- ☆ 간호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정리
-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도서명 : 간호법규

ISBN : 979-11-7393-049-2

발간일 : 2025-07-09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mailto:by4782@gmail.com)

정가 : 9,000원



# 간호법규

## [목차]

### 제1권 간호법

제1장 총칙(p6)

제2장 면허와 자격(p8)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p28)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p41)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처우 개선 등(p52)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p63)

제7장 보칙(p72)

제8장 벌칙(p85)

# 제2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절 총칙(p86)

제2절 교육(p96)

제3절 자격시험(p101)

제4절 자격증(p108~109)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1권 간호법

(이하 법)

[약어]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국시원은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

(국가시험관리기관)

국시원장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중앙회는 간호사중앙회

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

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심의위는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1~3조

### 1. 목적

## 가) 법은

-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나) 시행령은 법,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2. 간호사등의 정의

-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받은 자
- 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받은 자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간호사등에 관해 법에서 규정 않은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2장 면허와 자격

4~11조

### 1. 간호사 면허

- 간호사가 되려면 다음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장관의 면허 받아야 함

가. 평가인증기구 인증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전문대 졸업자

1) 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

2) 다음 사람은 해당(자격)자로 봄

a)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 인증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전문대 입학자로서 그 대학,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위 받은 자

b) 평가인증기구 인증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전문대를 6개월내 졸업하고 해당 학위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 단, 졸업예정시기에 졸업 학위 받아야 면허받음

나. 외국의 상기 해당 학교(장관 고시 인정기준 해당 학교) 졸업 및 외국 간호사 면허 받은 자

##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가) 장관은 간호사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나)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다음 사람으로서

장관 실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장관의 자격인정 받아야 함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또는

-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

### 3. 조무사 자격인정 등

#### 가. 자격인정

- 조무사가 되려면 다음 사람으로서 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장관의 자격인정 받아야 함

1)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 이상 학력 인정되는 자(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 국/공립 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

-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 학원 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 장관 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

조무사 자격 취득한 자(조무사 교육과정 이수  
간주)

3) 평가인증기구 인증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

전문대 졸업 또는 외국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 받은 자

- 조무사 교육과정 이수 간주

(비고)

- 졸업자에 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 6개월내 졸업 예정자 포함

## 나. 교육과정

### 1) 이론교육

- 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
- 740시간 이상

### 2) 실습교육

- 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
- 780시간 이상(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 400시간 이상)

3) 장관은 주의 이상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교육과정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면 장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 달리 운영

## 다. 조무사 교육훈련기관

### 1) 장관의 지정/평가 받음

#### a) 지정/평가 기준

-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의 적절성
- 교육인력, 교육시설, 교육장비의 적절성
- 재정 여건, 교육훈련 능력 수준
- 교육 운영실적 수준

## - 장관 인정 사항

b) 지정/평가 받으려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첨부해 장관에 제출

- 기관 설치/설립 등 증빙서류
- 기준 구비 증명 서류

## c) 장관은

- 신청기관에 지정/평가 실비 부과 가능
- 관계 기관, 개인 등에 자료, 의견 요청
- 지정/평가 완료한 때 평가 결과, 지정 여부,  
지정기간 알림
- 지정하는 때 지정서 발급, 보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